

직 원 채 용 규 칙

제 정 2005. 05. 02.
개 정 2012. 06. 08.
개 정 2015. 12. 30.
개 정 2016. 12. 29.
 전면개정 2018. 12. 26.
개 정 2019. 01. 23.
개 정 2019. 02. 13.
개 정 2019. 07. 30.
개 정 2019. 12. 17.
개 정 2020. 03. 31.
개 정 2020. 07. 23.
개 정 2020. 12. 14.
개 정 2020. 12. 28.
개 정 2021. 07. 13.
개 정 2022. 05. 03.
개 정 2022. 12. 27.
개 정 2023. 10. 13.
개 정 2023. 12. 2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(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)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12.26.>

제2장 공개채용

제2조(채용계획) ①채용은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으로 실시하고,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채용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23.12.26.>

1. 정기채용은 상반기(직전년도 12월말까지)·하반기(당해년도 6월말)의 기본채용계획(전북특별자치도 총괄부서에 제출)에 의해 실시하고,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제출·협의(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문시행)한다.
<개정 2019.1.23., 2019.7.30., 2020.3.31., 2023.12.26>
2. 수시채용은 비정규직 및 긴급한 인력수요 발생 시 실시하고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제출·협의(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문시행)한다. 단,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채용계획의 제출·협

직원채용규칙

의가 가능하다. <개정 2019.7.30., 2020.3.31., 2020.12.14., 2023.12.26>

② 「전북특별자치도 출자·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연간 상·하반기 채용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. <개정 2020.3.31., 2023.12.26>

제3조(채용공고) ①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(채용인원이 10명 이하 일 때에는 10일전)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한다. <개정 2020.7.23.>

1. 직급별 응시자격
2.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
3.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, 합격배수, 가점기준
4. 제출서류
5. 원서접수처 및 접수마감일
6. 시험일시 및 장소
7. 제출서류 반환청구기간
8. 기타사항

② 채용공고는 연구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,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한다. 필요시 관련협회 및 단체, 대학 등에 공고문을 송부하여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6.>

③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, 합격인원, 응시인원, 합격기준 등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 <신설 2021.7.13.>

제3조의2(재공고) ① 분야별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, 원서접수일,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해야 하며 채용공고에 명시한다. <신설 2020.12.28.>

② 재공고에도 분야별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응시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0.12.28.>

제3조의3(변경공고)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, 전형별 합격배수,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 <신설 2023.12.26.>

제4조(원서접수) ①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되, 공휴일은 제외한다.

② 접수방법은 인터넷, 방문, 우편으로 실시한다.

- ③접수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자 현황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- ④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내에 응시자가 <별지서식 1>에 의해 반환청구 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한다. <개정 2020.3.31.>

제5조(시험의 방법) ①시험방법은 서류심사, 필기시험, 직무수행계획발표, 연구발표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9.1.23.>

1. 서류심사는 자격요건, 경력심사, 연구실적 등 <개정 2019.1.23.>
2. 필기시험은 NCS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: 국가직무능력 표준, 이하 “NCS”라 한다)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, 전공분야 <개정 2020.3.31.>
3. 직무수행계획 발표는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심사 <신설 2019.1.23.>
4. 연구발표는 별도주제에 대한 연구발표 심사 <개정 2019.1.23.>
5.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, 인품, 정신자세, 발전가능성, 적극성 등 <개정 2019.1.23.>

②연구직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, 연구발표, 면접시험으로 한다.<개정 2022.12.27.>

③관리직 및 정보직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, 필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20.3.31.>

④<개정 2022.12.27.> <삭제 2023.10.13.>

⑤전문직 중 전문연구원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,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시험으로 하고, 전문행정원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, 필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23., 2020.3.31., 2022.12.27.>

⑥운영직 중 청소원, 정리원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와 면접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23., 2020.3.31., 2022.05.03., 2022.12.27., 2023.12.26>

⑦계약직의 시험방법은 서류심사(적격심사), 면접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23., 2020.3.31.>

⑧면접시험만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구조화된 면접(경험·상황면접 등)을 실시한다. <신설 2021.7.13.>

⑨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,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다. <신설 2019.7.30.>

1.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,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험 다음단계 전형부터 시험을 재실시한다. 이 때 면접시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채용한다.
2.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험전형부터 시험을 재 실시한다.

⑩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심사표는 <별표 3>과 같으며, 면접심사표는 서류심

사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게시한다. <개정 2020.3.31., 2022.05.03., 2022.12.27., <개정 2023.10.13., 2023.12.26.>

제6조(시험과목) 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은 <별표2>와 같다. <개정 2020.3.31.>

②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은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로 한다. <개정 2020.3.31.>

③필기시험은 객관식시험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20.3.31.>

제7조(심사위원 등) ①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심사, 필기시험, 연구발표, 직무수행계획발표, 면접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9.2.13.>

1. 해당 전공분야에 전문지식,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당해 실무에 대해 능통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은, 각 시험 방법별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류·필기시험·연구발표 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참여시키되, 자격위주로 서류 심사하는 경우 외부위원은 1명 이상을 참여시킨다. <개정 2019.12.17., 2022.12.27.>
2. (직무수행계획 발표 및)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, 반드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. <개정 2020.3.31., 2022.12.27.>
3.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, 비상임 이사 등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9.7.30., 2021.7.13.>
4. 각 전형별 심사위원은 중복 위촉할 수 없다. <신설 2019.12.17.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·회피하여야 하고, 기피될 수 있음을 심사위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약서를 징구한다. <개정 2019.7.30.>

1.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
2.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(혈족 및 인척)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근무경험관계(동일부서)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

④제2항 제2호의 면접시험 심사위원에게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. <개정 2019.2.13.>

⑤전문성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채용의 전단계(공고, 모집, 시험 등)를 타 기관과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할 수 있으며, 필기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. 단 「전북특별자치도 출자·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'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'

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침에 따라 시험과목 등 시행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., 2020.7.23.,2023.12.26>

1.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·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직원을 입회하여 참여시킨다.
2. 위탁기관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 해지와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.

⑥면접응시자의 성별을 기록·유지하여 성비 비교 등 모니터링을 한다. <신설 2019.12.17.>

제8조(합격의 기준) ①합격기준은 서류심사, 필기시험(단, 과목별 합격기준은 만점의 40% 이상), 연구발표, 면접시험,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만점의 평균 60% 이상으로 한다. 단, 서류전형은 자격확인 위주로 심사하는 경우, 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시킨다. <개정 2019.2.13., 2020.7.23.,2022.12.27.,2023.12.29>

②각 시험별 응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연구발표 또는 필기시험 평가 순에 의거 5배수 이하(해당배수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)로 전형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한다. <개정 2019.1.23., 2020.3.31., 2020.7.23.,2022.12.27.>

③원장은 결원시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시 후보합격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7.23.>

④각 채용 단계별 응시자 중 탈락자(만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)에 대해 점수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내부 관리하고,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한다. <신설 2020.7.23.>

제9조(가산점 등 부여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자와 그 가족은 각 법률에 의한 가산점을 각 전형별로 부여하고, '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'에 의한 장애인은 각 전형 시 만점의 3%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.>

제10조(합격자 결정) ①합격자의 결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합격한 자 중 각 시험성적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. 이 때 시험별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고문에 명시한다. <개정 2019.2.13., 2019.6.25., 2020.3.31.>

1. 연구직은 연구발표(35%), 면접 심사(65%) <개정 2022.12.27.>
2. 관리직 및 정보직은 면접심사(100%)
3. <개정 2022.12.27.> <삭제 2023.10.13.>

직원채용규칙

4. 전문직 중 전문연구원은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심사(100%), 전문행정원은 면접심사(100%) <개정 2022.12.27.>

5. 운영직 중 청소원, 정리원은 면접심사(100%) <개정 2022.05.03., 2022.12.27., 2023.12.29>

6. 계약직은 면접심사(100%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시험성적을 합산한 총득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.<개정 2019.2.13., 2020.3.31., 2020.7.23., 2022.12.27.>

1. 연구직은 면접시험(1순위), 연구발표(2순위)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.

2. 면접시험(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시험 포함)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제9조의 취업지원대상자(1순위), 장애인(2순위), 면접시험 항목 중 전문직식(청소원의 경우 경력) 점수(3순위),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27.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득점자가 제8조의 합격기준에 합격한 경우에도 득점수준이 현저히 낮아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3.>

④채용과정에서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비위사실이 확정된 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합격 적발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고문에 명시한다. <개정 2020.3.31.>

⑤각 전형 단계별로 불합격자에 대한 <별지서식 2>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3.31.>

제11조(임용대상자의 등록 및 채용) ①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<별표1>의 임용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.<개정 2022.05.03.>

②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등 충원이 필요한 경우 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하되, 임용유효기간은 제1항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, 주요내용을 공고에 명시한다. <개정 2019.2.13., 2020.3.31.>

③매년 신규 채용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)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개정 2019.7.30.>

④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<별지서식 3>의 공정채용확인서 및 인사규정 제1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시 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확인하는 <별지서식 4>의 결격사유확인각서를 채용 예정자에게 제출받는다. <신설 2020.3.31.> <개정 2022.12.27.>

제12조(수당지급) 공개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피면접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3.>

제13조(채용비위자 보직관리) ①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, 정직 미만 2년 동안 인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. <신설 2019.12.17.>

②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고,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. <신설 2019.12.17.>

1. 정직 : 18개월
2. 감봉 : 12개월
3. 견책 : 6개월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6.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12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2.29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2.26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.2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2.1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7.30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2.17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3.3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7.2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14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2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7.1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5.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2.27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0.1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2.29.>

이 규칙은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제1항 및 제2항“전북특별자치도”

제3조 제2항 및 제4항“전북특별자치도”

제3조의 3 “전북특별자치도”

제7조 제5항“전북특별자치도”

<별표1><개정 2015.12.30., 2020.3.31.,2022.5.3>

등 록 확 인

【수험생 인적사항】

- 수험번호 :
- 성 명 : ○ 생년월일 :

위 수험생은 20 . . 회 전북연구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비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학력증명서 1부 ③상세기본증명서 1부 ④가족관계증명서 1부
⑤ 경력증명서 1부 ⑥주민등록등본 1부 ⑦주민등록초본 1 ⑧ 반명합판 사진 1매

등 록 확 인 증

【수험생 인적사항】

- 수험번호 :
- 성 명 : ○ 생년월일 :

위 수험생은 20 . . 회 전북연구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

전 북 연 구 원 장

<별표2><신설 2015.12.30., 2020.3.31.>

시험과목(필기시험)

구 분	시험과목
관리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○ (전공) 행정학, 법학, 경제학, 경영학, 회계학 중 택1
정보직	<p>【사서분야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○ (전공) 정보봉사개론, 자료조직개론 중 택1
	<p>【전산분야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○ (전공)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 중 택1
	<p>【조사분야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○ (전공) 통계학개론, 출판잡지론, 신문론 중 택1
<p>※ 분야별 전공시험은 채용계획에 의해 지정한다.</p>	

1. 서류심사표

서 류 심 사 표					
1.응시번호		2.응시분야		3.성 명	
3. 심사항목 및 기준		응시자 자격내용 (해당 간에 ○)		적격여부 (적격/부적격)	심사결과 (합격/불합격)
자격요건		해당	미해당		
제출서류		구비	미구비		
20					
서류심사자 소속		성 명 (서명)			
전북연구원장 귀하					

※ 공통

2. 연구발표심사표

연구발표 심사표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대상자						
모집분야		성 명		접수번호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평정						
○ 평 점 : 5개 항목 100점 만점(60점 이상 합격)						
○ 득점 란에 항목별 점수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심 사 항 목	배점	득 점				
배점 및 득점	합계					
	(100)	탁월 25~23	우수 22~19	보통 18~15	미흡 14~11	부족 10~7
전문지식	25					
연구내용의 충실성·우수성	25					
연구내용의 논리성	25					
정책과의 연계성·실현가능성	25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의견						
20						
심 사 자 : (인)						
전북연구원장 귀하						

※ 직렬 : 연구직

3-1. 면접심사표

면 접 심 사 표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대상자						
모집분야		성 명		접수번호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평정						
○ 평 점 : 5개 항목 100점 만점(60점 이상 합격)						
○ 득점 란에 항목별 점수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심 사 항 목	배점	득 점				
배점 및 득점	합 계					
	(100)	탁월 20~18	우수 17~15	보통 14~12	미흡 11~9	부족 8~6
전문지식	20					
발전가능성·적극성	20					
조직 융합·적응도	20					
성품·정신자세	20					
의사전달능력	20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사의견						
20						
심 사 자 : (인)						
전북연구원장 귀하						

※ 직렬 : 연구직, 관리직, 전문직, 운영직 중 정리원 <개정 2023.10.13.,2023.12.29>

3-2. 면접심사표

면 접 심 사 표						
□ 심사대상자						
모집분야		성 명		접수번호		
□ 심사평정						
○ 평 점 : 4개 항목 100점 만점(심사위원별 평균 60점이상 합격)						
○ 심사내용 :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, 성품·소질·정신자세, 건강상태, 조직 융합·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						
○ 득점 란에 항목별 점수 및 합계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심 사 항 목	배점	득점				
합계	총점					
항목별 점수	(100)	탁월 25~20	우수 19~16	보통 15~12	미흡 11~8	부족 7~4
경력	25					
성품·소질·정신자세	25					
건강상태	25					
조직 융합·적응도	25					
□ 심사의견						
20						
심 사 자 : (인)						
전북연구원장 귀하						

※ 직렬 : 청소원

<별지서식 1>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접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 서류		

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전북연구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연구원으로 방문 시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환청구서는 채용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때에는 해당 없습니다.

<별지서식 2>

전북연구원 20 년 제 차 직원 채용시험 이의신청서			
성 명		출생월일	월 일
이메일		연 락 처	
이의신청 내용	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사항에만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기재		
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, 채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공정채용확인서

현 소속		직 급				
성 명		생년월일				
임 용 일	20 . . .	채용방식				
원내 친인척 유 무 (배우자·4촌 이내 혈족·인척)	유 / 무	친·인척 인적사항	관계		부서	
			성명		직급	

위 기재사항은 사실이며, 추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감수할 것을 확인함

년 월 일

성명 : _____ (인)

전북연구원장 귀하

<별지서식 4>

결격사유 확인 각서

다음 전북연구원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(해당 / 미해당) 하며,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함. ※ 해당 시 채용 불가함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
 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3.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20 년 월 일

성 명 : _____(서명)

전북연구원장 귀하